

의안번호	2209567
의 퇴 인	최수진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5.
추 계 번호	25F175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에 의약품 품질 관리 시설 추가 － 공제대상 자산: (현행)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(토지 및 건축물 제외) ②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및 무형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→ (개정안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시설 추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)
- 현행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
 - －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, 건축물 등 제외)
 - －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및 무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 - 개정안은 공제대상 자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을 추가

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

현행	개정안
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- 단, 토지, 건축물, 선박 및 항공기,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	
사업용 유형자산 외의 유형 및 무형자산 - 연구·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- 운수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, 차량 및 운반구, 어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 등 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	
(신 설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

주: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및 제3항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규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로 규정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에 따라 공제대상 자산으로 추가될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제율이 인상되는 투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2020년 폐지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4 및 舊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10)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다음과 같으나, 개정안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범위가 구법과 동일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범위

구분	내용
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되는 설비	- 멸균기(고압증기멸균기, 세척멸균기, 과산화수소멸균기 등) - 건조기(동결건조기, 분말건조기 등) - 제약용수 관련 설비(정제수 설비, 제조용수시스템, 순수증기제조기, 초순수 제조장치, 과산화수소훈증기) - 냉동창고, 이동식 클린부스,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, 항온챔버 - 타정기, 과립기(과립실로타리과립기, 과립실역회전과립기, 건식과립기 등),

	코팅기, 정제기, 고속혼합기 - 건조설비(배풍기, 배출다트, 후드, 통기관, 통기밸브, 건조기, 건조조화기 등)
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에 위한 기계장치 또는 설비	- 자동세척기(컨테이너/드럼 세척기, 앰플세척기 등) - 제품 검사 및 포장설비(자동 선별기, 찰링기, 충전기, 캡슐성형기, 캡슐세척기, 캡슐인쇄기, 캡핑기, 자동카톤포장기 등)

자료: 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4 및 舊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10

- 또한, 개정안에 따라 신규 공제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기업규모별 투자액 등의 현황,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투자 규모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(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) 실적 구분은 가능하나,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과 같이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- 참고로, 舊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2017~2021년간 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舊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실적

	2017	2018	2019	2020	2021
공제실적	219	173	256	201	211

주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 및 국세통계포털(TASIS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